

공인노무사 자격증 []발급 []재발급 신청서

※ []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 5일
신청인	성명		생년월일
	등록기준지		
신청내용	시험 합격 연도		
	시험면제 [] 면제 여부 ※ 해당 근거: 「공인노무사법」 제3조의3제1항()호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()호 []비면제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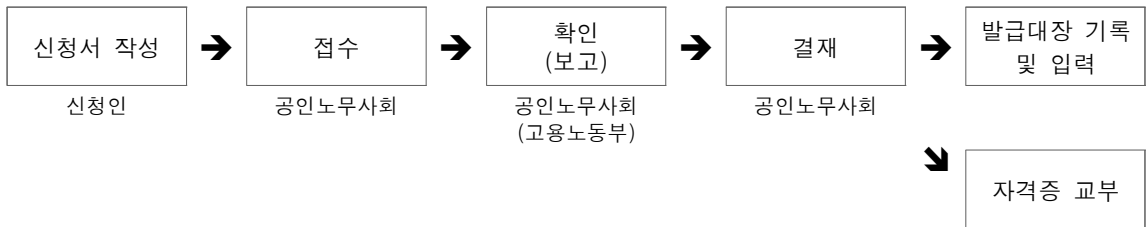
「공인노무사법 시행령」 제14조제1항·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·제3항에 따라 위와 같
이 신청합니다.

신청인 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귀하

첨부서류	1. 발급 신청의 경우 가.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.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,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 2. 재발급 신청의 경우 가. 자격증(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) 나. 사유서 1부 다.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,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